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강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 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9조제1항)
- 나.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적용(안 제61조의2제1항)
- 다. 4대 보험 자격 변동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0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의 비전문취업의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
연금·건강보험만 해당) 8.취득 취소(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9.상실 취소(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건강보험증 수령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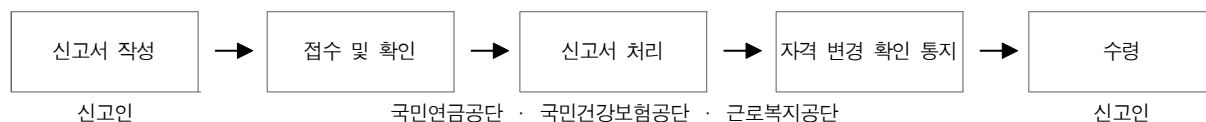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자"를 변경 신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취득 취소", "상실 취소"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확인서(취득·상실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시 생략 가능)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자" 및 "자격상실일자" 변경 신고 및 "취득 취소" 및 "상실 취소"를 신고할 경우, 변경 후 변동일이 변경 전 변동일로부터 전후 6개월 초과하거나 기존 처리일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취득 취소" 또는 "상실 취소"의 경우, '변경 전'란은 종전에 신고하였던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적고, '변경 후'란은 99991231로 적습니다.
 - (예) 취득 취소 - 변경 전 / 변경 후 : 20210201 / 99991231

처리 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변경·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u>신청서</u>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 ----- ----- ----- ----- <u>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의 “<u>외국인 근로자</u>”로서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u>」 별표 1의2 제21호의 <u>비전문취업의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u>
<u><신 설></u>	4. 「<u>출입국관리법</u>」 제10조제2 <u>호의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